

#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

## 이의신청 · 제척기간 · 재심사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는 2023. 3. 24. 시행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제36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제23조) 및 ‘처분의 재심사 제도’(제37조)의 취지 및 내용, 운영상 유의사항 등과 각 제도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Contents

## I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                        |    |
|------------------------|----|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4  |
| 2. 이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4  |
| 3. 이의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 8  |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  |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11 |
| 6. 개별법 정비사업 추진 현황      | 12 |
| 7. 이의신청 제도 관련 질의·응답 사례 | 13 |

## II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19

|                          |    |
|--------------------------|----|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21 |
| 2. 제재처분 제척기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21 |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 |
| 4. 실권의 원칙과의 관계           | 25 |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26 |
| 6. 제재처분 제척기간 관련 질의·응답 사례 | 27 |

## III

### 처분의 재심사

33

|                        |    |
|------------------------|----|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36 |
| 2.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37 |
| 3. 재심사업무 처리 절차         | 39 |
| 4.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 41 |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41 |
| 6. 처분의 재심사 관련 질의·응답 사례 | 43 |

|                         |    |
|-------------------------|----|
| ■ 그 밖의 유의사항             | 45 |
| ■ 별첨 자료                 | 46 |
| ■ 「행정기본법」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 57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                          |    |
|--------------------------|----|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4  |
| 2. 이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4  |
| 3. 이의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 8  |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  |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11 |
| 6. 개별법 정비사업 추진 현황        | 12 |
| 7. 이의신청 제도 관련 질의 · 응답 사례 | 13 |

---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3. 24.]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이의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종래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었고,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러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조가 적용되도록 하여 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2 이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가. 이의신청의 적용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은 처분 중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제외된다.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적용 대상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가 적용되려면, 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어야 하고, ② 특별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 아니어야 하며,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자체가 새로운 처분이 아니어야 한다.

###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 것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과 같은 개념이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특별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 아닐 것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이 아닌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특별행정심판이 적용되거나 「행정심판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예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군인연금여재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선거소청, 소청심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노동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해양심판원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검찰청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난민법」 제21조, 「도로교통법」 제165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3) 다른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자체가 새로운 처분이 아닐 것**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가 원처분에 대한 판단에 국한되어 처분성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준하는 절차로 볼 수 있으나, 원처분의 근거가 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58645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甲 등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부적격통보'라고 한다)을 하고, 甲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이하 '재심사통보'라고 한다)를 한 사안에서, 부적격통보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일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일괄 통보한 것이고, 각 당사자의 개별·구체적 사정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추가로 심사하여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甲 등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에 따른 재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재심사통보가 부적격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甲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甲 시장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1차 통지),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 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2차 통지) 사안에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신설되면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절차적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乙이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조정금 산정결과 및 수령을 통지한 1차 통지만 존재하였고 乙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乙의 이의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통지서의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이 명백하고,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금에 대하여 다시 재산정, 심의·의결절차를 거친 결과, 그 조정금이 종전 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2차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다. 신청 주체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이해관계자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라. 신청방법 및 기간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날’은 해당 처분을 규정한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규정이 적용된다.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그 보다 짧거나 길게 정한 경우에는 개별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 이러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행정청은 그 기간이 지나 신청된 이의신청을 처리할 의무는 없다.

이의신청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행정기본법」 제6조).

당사자가 2020. 11. 25.(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은 2020. 12. 25.(공휴일, 금요일)이므로 2020. 12. 2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의신청서에는 ①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②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③ 이의신청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이의신청서 서식 : [별첨 1]

## 마.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 [별첨 2]
- ※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 : [별첨 3]
- ※ 이의신청 처리대상 서식 : [별첨 4]

## 3 이의신청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당사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한 후에 그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기 전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도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자체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14일, 행정청이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대 24일)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검토가 진행되는 중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우선 따르고,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아래의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36조제7항).

-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③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④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가.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과의 관계

민원처리법에서는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청의 처분 중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처럼 민원처리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공공재정환수법상 이의신청과의 관계

공공재정지급금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개별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가. 이의신청 제도의 적용 시점

「행정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23. 3. 24.(이의신청 제도 시행일) 이후 하는 처분부터이다.

### 나.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개별법 또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법 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3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청은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과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 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의 준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직접 관련되므로,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라. 개별법에서 일부 처분만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두면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 중에서 일부만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려는 「행정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가급적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이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 마. 이의신청 대장 철저 관리 필요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법제처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총괄·관리 역할(「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해 이의신청 업무 처리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므로,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철저히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 6 개별법 정비사업 추진 현황

개별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 이의신청 제도가 규정된 개별법 일괄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별법의 규정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개정 추진 중인 이의신청 관련 법률 목록 : [별첨 5]

## 7 이의신청 제도 관련 질의 · 응답 사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특별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은 제외됩니다.

※ (참고)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023. 3. 24.) 이후의 처분부터 적용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① 이의신청 대상이 처분일 것(처분이 아니면 적용대상이 아님),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처분이 아닐 것(개별법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자체가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참고), ③ 이의신청이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의 필수적 전치절차가 아닐 것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에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의 처분(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제3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라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이의신청 대상 처분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처분도 원칙적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해당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제한적으로 두려는

입법취지나 의도가 명확히 규정에서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일정한 처분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 소관부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시행일('23. 3. 24.) 이후 그 외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법을 개정하여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개별법에 그 기간 연장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에게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3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한 경우, 해당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90일)이 산정되나요?**



행정청이 이의신청기간 계산의 착오 등 여러 사유로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결과통지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자체가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본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불복방법 안내를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 공사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이의신청 대상이 된 “원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에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시행일('23. 3. 24.) 이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이 보충 적용되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원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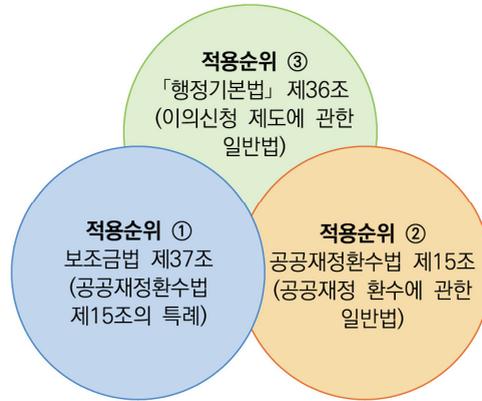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개별법에 그와 관련한 이의신청 규정(예를 들어, 보조금법 제37조)이 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제15조(이의신청)가 보충 적용됩니다.

개별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36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36조(특히 같은 조 제4항)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과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규정의 적용관계



처분서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적용대상이 되는 처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그 시행일(‘23. 3. 24.)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적용대상인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는 처분서에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고지 안내 문구(예시)

“000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질의와는 별개로, 현재 행정청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행정청은 그에 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안내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II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                            |    |
|----------------------------|----|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21 |
| 2. 제재처분 제척기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21 |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 |
| 4. 실권의 원칙과의 관계             | 25 |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26 |
| 6. 제재처분 제척기간 관련 질의 · 응답 사례 | 27 |

---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제척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 법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하게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청이 법령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법령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장기간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간 제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재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를 형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제재처분이 부과되면 기존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제재처분의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 2 제재처분 제척기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가.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대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6종의 제재처분에 한정된다. 여기서 인허가는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말하며(법 제16조제1항), 자격이나 신분 등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외의 과징금 부과처분(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은 개별법에 따른 제척기간 규정을 따르며,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과태료는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재처분에 포함되나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포함되지 않는 점(이행강제금은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제재처분에서 제외되는 행정상 강제에 해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나. 제척기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다. 다만, 개별법에서 5년보다 짧거나 길게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이 적용된다.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위반상태가 확정되어 제재처분이 가능한 때를 말한다. 위반행위 자체가 당사자의 부작위인 경우(보험가입 의무 위반, 교육이수 의무 위반 등)로서 제재처분이 부과되는 법률상 의무에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위반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무에 관한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특정하기 어렵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기산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작위의무 위반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무의 성립일이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무의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고로,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 등 「행정기본법」 제23조와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척기간 적용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7.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다. 재결·판결 후 새로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재결이나 판결 결과는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제재처분을 취소한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제재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면 행정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라. 제척기간의 적용 제외

다음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23조제2항).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혹은 공익상 제재처분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②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④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별법에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처분인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은 처분인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에 관한 법률은 5건이 있다. 법제처에서는 국가 법체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해당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번 | 소관부처  | 법률명                 | 해당 조문       | 비고                                 |
|----|-------|---------------------|-------------|------------------------------------|
| 1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4항(삭제) | 의안번호 2119528<br>(2023. 1. 17. 발의)  |
| 2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 제82조의2      |                                    |
| 3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 제84조의2      |                                    |
| 4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 제39조의3(신설)  |                                    |
| 5  | 행정안전부 | 행정사법                | 제32조의2(신설)  | 의안번호 2119100<br>(2022. 12. 23. 발의) |

한편,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4 실권의 원칙과의 관계

실권(失權)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정청이 권한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행정청이 위법성을 이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12조제2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도 신뢰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점에서 실권의 법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처분이 6종의 제재처분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인 반면, 실권의 원칙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는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다.”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 대상

「행정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이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권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나. 제척기간의 진행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하기 전에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제재처분의 절차가 개시(제재처분의 요청, 처분의 사전통지 등)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법원 2004. 7. 22선고 2004두2509 판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점(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과 범위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효력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시기까지 당해 법조항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좇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조항이 실효력을 선언함과 아울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의 기간 동안 배제된다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다. 제척기간 적용 대상 처분인지의 확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모든 제재처분이 아니라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같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 6종의 처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행정처분 시 및 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시 해당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적용 대상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6

## 제재처분의 제척기관 관련 질의 · 응답 사례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는 “제재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행정상 강제는 제외)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척기간 적용 대상 제재처분”으로, ①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② 등록 말소, ③ 영업소 폐쇄, ④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제재처분(예컨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아닌 과징금)은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함(③ 영업소 폐쇄의 수식을 받지 않음)

여기서 “인허가”의 의미는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의 처분(「행정기본법」 제16조 약칭 참고)을 말하나, 법 제16조에서 인허가를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는 경우와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신분, 자격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처분은 법 제23조의 인허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특정 처분이 인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률 및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건축허가·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취소는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재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 중지,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척기간 적용대상 제재처분은 일정한 처분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실권의 원칙에 따라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제재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진행되나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예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등)에도 최초 법 위반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후 그 위반상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계속적 위반행위”인 경우, 만일 최초 위반 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위반상태가 계속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어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등 개별법에서 제척기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 제척기간을 둔 경우도 있고, 제척기간 기산점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법 적용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와 개별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법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정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5년)이 적용됩니다.

\* ①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② 등록 말소, ③ 영업소 폐쇄, ④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이와 달리, 개별법에 제척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23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개별법과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적용 관계**

①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개별법 제00조(제척기간)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
|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br>* 개별법상 제척기간(3년)과 기산점이 우선 적용 |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

② 「행정기본법」 제23조가 보충 적용되는 경우

| A 개별법 제00조(등록취소 등)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br>A 개별법 제00조(과징금)  |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br>*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보충 적용<br>→ 개별법에서 제척기간 규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5년) 보충 적용 |
| ① 시·도지사는 제0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1. ~ 4. (생략)<br>*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보충 적용<br>→ 개별법에 규정된 사유 외에도,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 A 개별법 제00조(제척기간)<br>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0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br>*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 보충 적용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와 제12조제2항(실권의 원칙)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정한 위반행위의 경우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4일 전에 이미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제23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권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권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모든 제재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실권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을 것, ② 장기간 권한의 불행사가 있을 것, ③ 권한의 불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것, ④ 공약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이 있으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제23조가 적용될 수 없더라도 실권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는 없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에는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한 것(제2항) 외에 제척기간의 정지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정지나 중단 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정지나 중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참고) 「행정기본법」 제23조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이 법령등의 위반행위를 뒤늦게 인지하여 제척기간(5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그에 관한 제재처분 절차(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를 거치는 도중 5년이 지나서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처분의 재심사

---

|                          |    |
|--------------------------|----|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36 |
| 2.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37 |
| 3. 재심사 업무 처리 절차          | 39 |
| 4.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 41 |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41 |
| 6. 처분의 재심사 관련 질의 · 응답 사례 | 43 |

---



##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룰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 2023. 3. 24.]

**부칙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시행일: 2023. 3. 24.]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는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행일: 2023. 3. 24.]

## 1 제도의 취지 및 의의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그 밖의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룰 수 없게 된 경우(불가쟁력 발생)라도 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반하므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 행정법에 없었던 새로운 국민 권리구제 제도로써 민·형사상 재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행정법에 도입한 것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더 이상 다룰 수 없음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조리(條理)상의 신청권이 처분의 재심사 규정을 통해 법규상 신청권으로 전환된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2 처분의 재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 가. 재심사 대상 처분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 중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이다. 주로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이에 해당할 것이나, 금전이나 조세를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처분 등도 재심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 처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법 제2조제4호)
- 제재처분 :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법 제2조제5호)
- 행정상 강제 :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위와 같은 처분 중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쟁송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다룰 수 없게 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만 재심사의 대상이 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37조제8항).

- 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②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③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④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⑥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 나. 재심사 신청권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다. 재심사 사유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6가지이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와 일부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으며, 행정 분야에 맞게 재심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절차, 행정쟁송 또는 그 밖의 쟁송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법 제37조제2항).

법원의 확정판결 있는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소송 포기, 판결선고가 아닌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다.

- 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③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 ④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⑤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 ⑥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라. 재심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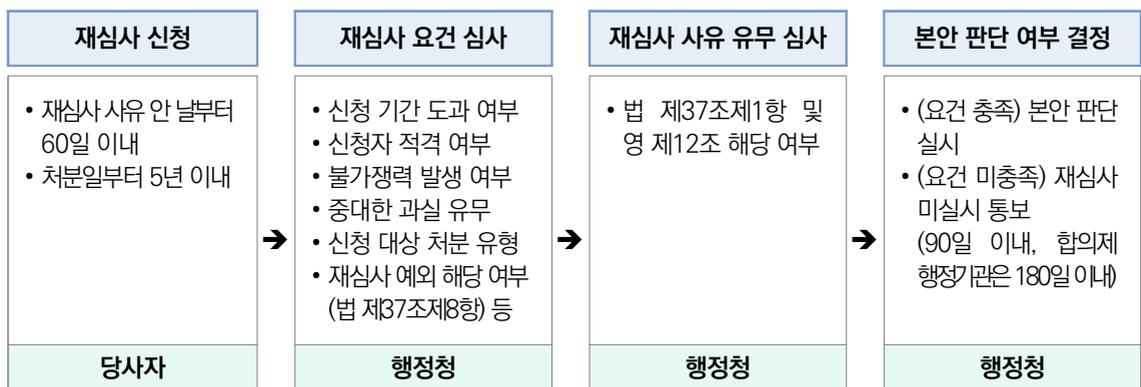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신청서에 ①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②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는 날, ③ 재심사 신청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사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재심사 신청은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재심사 신청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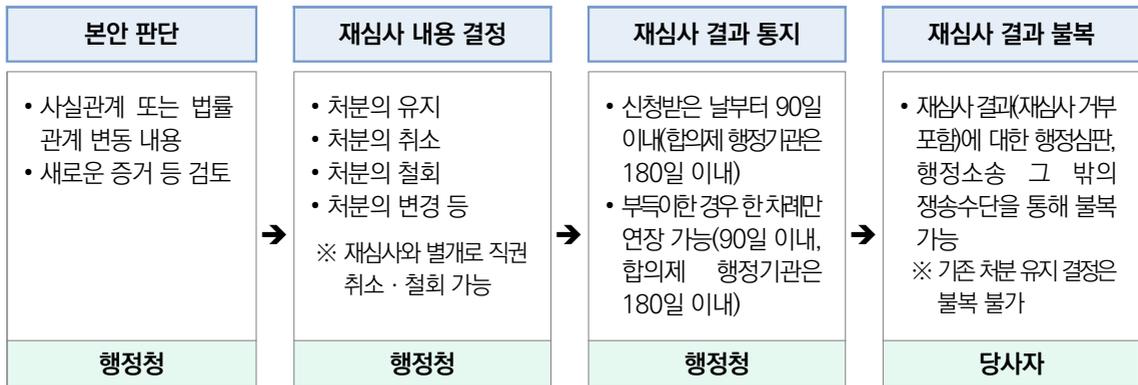
재심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할 내용을 명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처분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 [별첨 6]

※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 [별첨 7]

## 3 재심사 업무 처리 절차





### 가. 재심사 요건 및 사유 유무 심사

행정청은 처분의 재심사가 신청된 경우,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재심사 신청의 대상, 신청인, 상대방, 신청기간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재심사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재심사 요건을 판단한 후에는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유가 있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고, 재심사 사유가 없으면 재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안 판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본안 판단

재심사 신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재심사한다. 새로운 사실관계, 법률관계, 증거 등을 기반으로 하여 당초의 처분을 재심사한 후 그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재심사와 관계없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즉 재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은 나중에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취소·철회 규정(「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철회할 수도 있다. 직권 취소와 철회의 경우 제3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 다. 재심사 결과 통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연장 통지서에 연장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행정청이 재심사 신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 [별첨 8]

※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 : [별첨 9]

## 4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행정청은 처분을 재심사하여, 기존의 처분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처분을 취소·철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기존의 처분을 취소·철회·변경하는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쟁송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운영상 쟁점사항 및 유의사항

### 가. 재심사 제도의 적용 시점

처분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2023. 3. 24.(재심사 제도 시행일) 이후 하는 처분부터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부칙 제7조).

### 나.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변경의 가능 여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재심사에 대한 결정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원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처분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으로 다룰 수는 있으나, 원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처분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다.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에서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원처분을 취소·철회·변경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행정청이 처분의 재심사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철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심사를 거부(반려)하는 결정의 경우에도 재심사 제도의 도입취지 및 재심사 거부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마. 원처분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

처분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원처분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행정청이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심사 신청일부터 최대 180일(합의제행정기관은 36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재심사가 신청된 경우 행정청은 처분 일자, 처분의 근거 및 이유, 내용 등을 확인·검토해야 하고, 5년에 임박하여 재심사가 신청된 경우에는 결정 통지 시 5년을 경과하게 되므로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6 처분의 재심사 관련 질의 · 응답 사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주로 어떤 처분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가 제외되며, 그에 따라 재심사 대상은 주로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처분의 재심사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룰 수 없게 된 경우, 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되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려면 ① 쟁송제기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등) 이 도과한 경우이거나 ②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가 해당)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처분이 법 제37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처분의 취소 · 철회 또는 변경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정 자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심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의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의 문언 자체로는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의 “불복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허용한다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불필요한 쟁송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로 내려진 재심사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처분 유지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재심사 제도가 불가쟁력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재심사 결정에 다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청이 재심사를 인용(기존 처분의 취소·철회·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인용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에서는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결정(기존 처분을 취소·철회·변경하거나, 재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은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어야 하므로, 재심사 거부(각하) 결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 신청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는 점, 당사자의 재심사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를 다툴 수 없다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어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물각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거부(각하) 결정을 불복할 수 없다면 행정청이 이를 악용하여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재심사 거부(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 그 밖의 유의사항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시의 절차 준수 철저

- 2023. 3. 24. 시행되는 제도로 '직접강제'(법 제32조)와 '즉시강제'(법 제33조)가 있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 행정청이 직접강제를 하려는 경우 미리 대상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하고,
  -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강제의 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행정청에서 개별법에 따라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할 때는 개별법상 강제조치가 직접강제인지 즉시강제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위반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별첨 1]

## 이의신청서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이의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생년월일   |     |
|                  | 주소(법인·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        |     |
|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        |     |
| 이의신청 이유          |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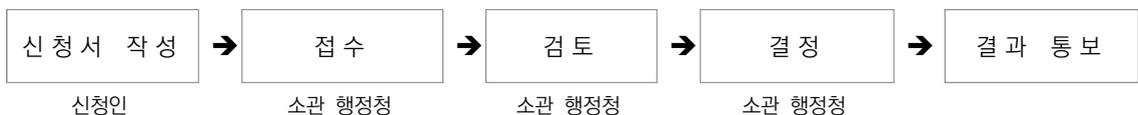
소관 행정청    귀하

|      |                      |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신청안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2]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        |
|------------|----|------------------------------------|----------|--------|
| 신청인        | 성명 | (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생년월일   |
|            | 주소 | (법인·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                                    |          |        |
| 이의신청 결과    |    | [ ]수용                              | [ ]일부 수용 | [ ]미수용 |
| 검토 결과 사유   |    |                                    |          |        |

소관 행정청 직인

기간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간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유의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3]**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  |       |  |
|----------------------------|--|-------|--|
| 이 의 신 청 내 용                |  |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  |
| 당 초 이 의 신 청<br>결 과 통 지 기 간 |  |       |  |
| 연 장 기 간                    |  |       |  |
| 연 장 사 유                    |  |       |  |

소관 행정청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4]

## 이의신청 처리대장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부서 | 대상 처분을 받은 날 | 이의신청 내용 | 신청인* |      | 이의신청 결과 | 결과 통지일** | 비고 |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통지일을 말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5]

개정 추진 중인 이의신청 관련 법률 목록

| 연번 | 소관 부처                | 법률명  | 해당 조문  |
|----|----------------------|--|--|
| 1  | 경찰청                  | 도로교통법  | 제94조   |
| 2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2조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법(과기부 소관)                                    | 제7조의2  |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25조의2   |
| 5  |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6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35조   |
| 7  |                      | 학술진흥법  | 제21조   |
| 8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4조의18  |
| 9  |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1조   |
| 10 |                      | 군용전기통신법  | 제14조   |
| 11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42조   |
| 12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5   |
| 13 |                      | 도로법  | 제71조   |
| 14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7조<br>제11조등                                   |
| 15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br>제18조                                   |
| 16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4조<br>제39조의21                                |
| 17 |                      | 자동차관리법   | 제28조   |
| 18 |                      | 주택법  | 제48조의3   |
| 19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7조<br>제21조의2                                 |
| 20 |                      | 국토교통부<br>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br>부 소관 조문) |
| 21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 제52조의3   |
| 22 |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br>지에 관한 법률 | 제4조  |
| 23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신설   |
| 24 |                      | 금융지주회사법  | 제67조   |
| 25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7조   |
| 26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의6<br>제14조의3<br>제18조의11                     |

| 연번 | 소관 부처            | 법률명                            | 해당 조문            |
|----|------------------|--------------------------------|------------------|
| 27 |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법                        | 제38조의5           |
| 28 |                  | 은행법                            | 제65조의6           |
| 2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25조<br>제432조   |
| 30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56조             |
| 31 | 기획재정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제18조             |
| 32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             |
| 3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약관리법                          | 제26조             |
| 34 |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9조              |
| 35 | 농림축산식품부<br>해양수산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br>제27조의4  |
| 36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3조             |
| 37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제2조              |
| 38 |                  | 관광진흥법                          | 제30조<br>제64조     |
| 39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1조<br>제54조     |
| 40 |                  | 저작권법                           | 제55조             |
| 41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신설               |
| 42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 제50조             |
| 43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44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45 |                  | 아동수당법                          | 제19조             |
| 46 |                  | 의료급여법                          | 제30조             |
| 47 |                  | 의료법                            | 제58조의5           |
| 48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            |
| 49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38조             |
| 50 |                  | 장애인복지법                         | 제84조             |
| 51 |                  | 장애인연금법                         | 제18조             |
| 52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6조             |
| 53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3조                           |                  |
| 54 | 산업통상자원부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14조             |
| 55 |                  | 산업융합 촉진법                       | 제15조             |
| 56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18조             |
| 57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6           |
| 58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 제68조의2<br>제86조의2 |
| 59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3           |

| 연번 | 소관 부처                      | 법률명                                    | 해당 조문         |
|----|----------------------------|--|---------------|
| 60 | 외교부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제5조           |
| 61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5조의5        |
| 6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
| 63 | 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          |
| 64 |                            | 선원법                                    | 제141조         |
| 65 |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          |
| 66 |                            | 해사안전법                                  | 제50조<br>제60조  |
| 67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8조<br>제21조  |
| 68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          |
| 69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조          |
| 70 |                            | 주민등록법                                  | 제7조의4<br>제21조 |
| 71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          |
| 72 |                            | 행정사법                                   | 제11조          |
| 73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3        |
| 74 |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
| 75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48조의16       |
| 7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제38조          |

[별첨 6]

## 처분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재심사 대상 처분       |  |                          |
| 재심사 대상 처분이 있는 날 |  |                          |
| 재심사 사유를 안 날     |  |                          |
| 재심사 신청 사유       |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      |   |        |
|------|---|--------|
| 첨부서류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신청안내

1.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2항).
2.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3항).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기]**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처분의 재심사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            |  |      |  |
|------------|--|------|--|
| 재심사 신청 내용  |  |      |  |
| 접수 번호      |  | 접수 일 |  |
| 보완 기간      |  |      |  |
| 보완 해야 할 내용 |  |      |  |

소관 행정청 직인

기간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간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유의사항**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8]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

「행정기본법」 제3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재심사의 결과 통지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  |      |  |
|-----------------|--|------|--|
| 재심사 신청 내용       |  |      |  |
| 접수 번호           |  | 접수 일 |  |
| 당초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 |  |      |  |
| 연장 기간           |  |      |  |
| 연장 사유           |  |      |  |

소관 행정청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9]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 서식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 )

「행정기본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신청인       | 성명 | (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생년월일 |
|           | 주소 | (법인·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재심사 대상 처분 |    |   |      |
| 재심사 결과    |    | [ ]재심사 불허 결정  |      |
|           |    | [ ]처분 유지 결정 [ ]처분 취소 결정<br>[ ]처분 철회 결정 [ ]처분 변경 결정 [ ]그 밖의 결정 |      |
| 재심사 결과 사유 |    |   |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 우              | 주소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전화( )          | 전송( )          | / 홈페이지 주소              |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유의사항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행정기본법」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행정작용

### 제1절 처분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

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횡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23. 3. 24.] 제23조

## 제2절 인허가의제

-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시행일: 2023. 3. 24.] 제24조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5. 2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2. 5. 24.>

**시행령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 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시행일: 2023. 3. 24.] 제25조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26조

### 제3절 공법상 계약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 제4절 과징금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

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5. 24.>

##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지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

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0조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1조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
2.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 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이행 기한은 행정상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2조

**시행령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3조

**시행령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4조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3. 3. 24.] 제36조

**시행령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 ② 행정청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④ 법제처장은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 처리 상황 등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룰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2023. 3. 24.] 제37조

**시행령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는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다. 국무조정실

라. 인사혁신처

마. 법제처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2. 5. 24.〉
- 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 5. 24.〉
- ⑤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5. 24.〉
- ⑥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5. 24.〉
- ⑦ 법제처장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5. 24.〉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칙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

발 행 : 2023년 2월

발행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Tel) 044-200-6741, 6737

(Fax) 044-200-6876

### 안 내

- 본 자료는 법제처 인터넷 누리집([www.moleg.go.kr](http://www.moleg.go.kr))의 ‘법제 업무정보’ - ‘행정법제 혁신’ 코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